

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62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2일  
제안자 : 교 통 위 원 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정지권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522호)과 정진철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551호)을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(2019. 4. 22.)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,

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2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

## 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론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그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토록 규정하였고,

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으며,

시장의 책무에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음에 따라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·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

### 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나. 시장의 책무에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6항)
- 다.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점검,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대책을 수립함(안 제11조제2항)

#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시장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,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대안)
제4조(외부회계감사) 「 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4조(외부회계감사)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9조(시장의 책무)  <신 설>	제9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 ⑥ 시장은 「 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제11조(안전운행 방안) ① (생략)  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<u>지속적인 점검을</u> 해야 한다.	제11조(안전운행 방안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--- <u>지속적으로 점검</u> 해야 하며,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-----.